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296

발의연월일: 2020. 11. 13.

발 의 자:이용빈・양정숙・이병훈

김홍걸・노웅래・우상호

유영찬 • 유준병 • 강훈식

이용선 · 민형배 · 이수진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발주자 안전조치 의무 규정'은 방사선투과검사 발주자가 그 종사자에게 과도한 작업을 지시하거나 열악한 작업환경 제공하여 안전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위하여 신설된 규정임.

그런데 현행법은 발주자 안전조치 의무 사항에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이를 위반하여도 처벌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여 의무조항의 법적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발주자가 열악한 작업환경을 제공하여 그 종사자의 안전이 직접 위협받을 경우 방사선투과검사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아니한 문제가 있음.

이에 발주자가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하지 아 니하여 그 종사자의 안전이 위협받을 경우에는 작업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방사선투과검사 작업환경의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 려는 것임(안 제59조의2제3항 및 제118조제4호 신설). 법률 제 호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2제3항 중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주자에게 안전설비의설치 또는 보완을 명하였음에도 발주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로, "경우 위원회는"을 "때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신설한다.

- 1. 발주자가 제1항에 따른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 2. 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발주자에게 안전설비의 설치 또는 보완을 명하였음에도 발주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18조제4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5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9조의2(발주자의 안전조치 의	제59조의2(발주자의 안전조치 의
무) ①・② (생 략)	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
주자에게 안전설비의 설치 또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
는 보완을 명하였음에도 발주	<u>के व</u>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u>때에는</u>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안전이 위	
협받을 <u>경우 위원회는</u>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	
사선투과검사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u><신 설></u>	1. 발주자가 제1항에 따른 안전
	한 작업환경을 제공하지 아니
	<u>한 경우</u>
<u><신 설></u>	2. 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발주
	자에게 안전설비의 설치 또는
	보완을 명하였음에도 발주자
	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
	우
④ ~ ⑧ (생 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11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제118조(벌칙)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u>.</u>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 설></u>	4. 제5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
<u>4.</u> (생 략)	<u>6.</u> (현행 제4호와 같음)
5. (생략)	5. (현행과 같음)